

[제11,12강] 문제해설 쟁점요약

제6절 운송증서

[문제1~문제4]

▣ 선하증권의 발행

■ 선하증권의 발행: 운송물 수령 후 송하인의 청구=>운송인(선장·대리인)이 발행(O)

■ 선적선하증권 발행 또는 선하증권에 선적표시: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=>운송인(선장·대리인)이 발행(O)

▣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(채권적 효력)

■ 요인증권성: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 선하증권에 기재대로 개품운송계약체결 +운송물 수령·선적=>추정(O)

■ 문언증권성: 선하증권소지인(선의취득)에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책임(O)

▣ 수통의 선하증권 발행

●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

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청구: 선장은 인도 거절(X)

■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: 다른 선하증권은 효력(X)

■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: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=>공탁(O)->청구자에 통지발송(O)

●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

■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은 후 운송물인도(O)

●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청구: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(O)->각 청구자에게 통지발송(O)

▣ 화물상환증 규정준용

■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(상129)

■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(상130)

■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(상132)

■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(상133)

■ 선하증권의 발행(상852)

■ 용선계약과 선하증권(상855)

제3장 해상위험

제1절 공동해손

[문제1, 문제2]

▣ 공동해손의 요건

■ 선박과 적하

■ 공동위험을 면할 것

- 선장의 선박·적하의 처분=>손해 또는 비용발생(O)
- 인명구조를 위한 선박·적하의 처분(X)
- 선박이나 적하 중 일부가 반드시 잔존(O)
- ▣ 공동해손의 분담
 - 위험을 면한 선박·적하의 가액+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(O)
- ▣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
 - 선박의 가액: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
 - 적하의 가액: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
 - 적하멸실: 지급면한 운임과 비용 공제(O)
- ▣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
 - 제외되는 물건
 -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
 -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화물
 -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기타 고가물
 - 갑판에 적재한 화물(관습상 허용물품과 연안항행의 경우는 제외)
 - 제외방법
 - 보존된 경우: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(O)
 - 손실된 경우: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(X)
- ▣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
 -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(X)=>소멸(O)
 - 합의에 의하여 연장(O)

제2절 선박충돌

[문제1]

▣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

-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
-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배상
-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상법상 선박충돌 규정적용(O)->민법상 불법행위규정 적용(X)
- 충돌: 직접적인 접촉유무 묻지 않음
- 불가항력충돌과 충돌원인 명백(X)=>손해배상청구(X)
- 선박충돌채권의 소멸: 충돌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(X)=>소멸(O)->연장가능(O)

제7편 환어음

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

[문제1~문제3]

▣어음의 요건

- 증권의 본문 중+작성할 때 사용국어로 환어음 표시
- 무조건+일정금액+지급위탁
- 지급인명칭
 - 선택적 기재(X), 중첩적 기재(O), 순차적 기재(O)
- 만기: 만기(X)->일람출급환어음(O)
- 지급지: 지급지(X)->지급인명칭에 부기한 지->지급지·지급인주소지(O)
- 지급받을 자·지시자의 명칭
- 발행일
 - 실제발행일과 기재된 발행일 일치(X)->유효(O) 예)선일자어음¹⁾
- 발행지
 - 발행지(X)->발행인명칭에 부기한 지->발행지(O)
 - 발행지(X)->국내어음이 명백(O)->유효(판)
- 발행인의 기명날인·서명
 - 법인: 대리방식(법인의 대표자·대리권자표시하고 기명·날인)/대행방식(대표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명의로 서명)
 - 법인명칭 기재(O)+대표기관날인(O)+대표기관의 기명·날인(X)=>무효(O)(판)
 - 대표이사 개인(발행인명의)+별다른 표시(X)+날인된 인영(법인명칭표시)=>법인명칭 기재로 볼 수(X)(판)
 - A주식회사甲(기명)+A주식회사 대표이사(인장날인)=>법인의 어음수표행위(O)(판)
 - 기명과 날인이 불일치: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의사(O)=>유효(O)(판)
 - 무인 또는 지장: 유효한 날인(X)(판)

▣어음행위

- 환어음: 발행, 배서, 보증, 인수, 참가인수
- 약속어음: 발행, 배서, 보증, 참가인수(학), 인수(X)
- 수표: 발행, 배서, 보증, 지급보증, 인수(X), 참가인수(X)

[문제4~문제5]

▣어음의 발행과 방식

- 기존채무이행으로 어음교부: 어음상주채무자와 원인관계의 채무자 동일(X)->제3자인 어음상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예정(O)=>지급을 위하여 교부 추정(O)=>다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(O)->추정은 깨짐(O)(판)
- 은행도 어음: 단순보관(X)->어음할인 등 유통목적(O)=>지급을 위하여 교부 추정(O)(판)
- 지급(지급확보)을 위하여 어음교부->기존채권과 어음채권 병존: 어음채권이 변제(상계)로 소멸->기존채권도 소멸(O)(판)
- 기존채무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

1) 실제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를 어음상의 발행일로 하는 경우

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교부(판)

- 특별한 사정(X)->기존채무의 변제기는 만기일로 변경(O)
- 기존채무의 불이행 상태에서 교부(O)->변제기가 만기일로 변경(X)

▣용통어음

- 개념: 어음발행의 원인(X)+자금유통의 목적으로 발행(O)
- 어음발행인·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교부: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(O), 용통어음(X)(판)
- 발행인의 용통어음항변: 어음양수한자의 선의·악의 불문하여 대항(X)(판)
- 용통어음판단: 당사자의 주장(O)+구체적 사실관계 검토(O)(판)
- 용통어음자의 책임: 피용통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어음금채무부담(O), 피용통자의 보증인(X)(판)

[문제6]

▣유익적·무익적·유해적 기재사항

●유익적 기재사항

- 지급인·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
- 역어음발행금지
- 제3자방 지급문구
- 이자문구
- 발행인 인수무담보문구
- 배서금지문구
- 거절증서작성면제
- 인수·지급제시기간(1년)의 단축·연장

●무익적 기재사항

- 위탁어음문구
- 확정일출급·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의 이자문구
- 이율기재(X) 이자문구
- 발행인의 지급무담보
- 지시문구·제시문구·상환문구

●유해적 기재사항

- 법정만기와 다른 만기의 기재
- 분할출급문구

▣자기지시어음: 자신을 지급받을 자

▣자기앞어음: 자신을 지급인

▣위탁어음: 제3자의 계산

[문제7~문제12]

▣이자의 약정

-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: 이자약정(O)
-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, 확정일 출급: 이자약정(X)->무익적 기재사항(O)

- 이율은 어음에 적어야(O): 이율(X)->이자약정(X)
- 이자계산 기산점: 특정한 날짜(X)->어음 발행한 날짜(O)
- ▣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
 - 글자+숫자 금액차이: 글자금액(O)
 - 글자+글자, 숫자+숫자의 금액차이: 최소금액(O)
- ▣ 어음채무의 독립성: 다른 기명날인·서명자에 영향 없는 기명날인·서명
 - 어음채무의 부담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·서명
 - 위조된 기명날인·서명
 - 가공인물의 기명날인·서명
 - 기타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·서명
 - 본인에게 의무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·서명
- ▣ 어음행위의 무권대리
 - 무권·권한초과 대리인이 기명날인·서명: 어음채무부담(O)
- ▣ 발행인의 책임
 - 인수책임(O): 인수무담보 기재(O)->유익적 기재사항(O)
 - 지급담보책임(O): 지급무담보 기재(X)=>기재(O)->무익적 기재사항(O)

[문제13~문제19]

▣ 백지어음

- 미완성 발행+보충권=>완성어음
- 어음행위자²⁾의 기명날인·서명: 반드시 필요(O), 기명날인·서명의 백지(X)
- 어음금액란이 백지인 어음발행: 통상적으로 보충권의 범위 한정(O)->기명·날인 자에 확인 없이 보충권행사(O)=>특별한 사정(X)->취득자의 중대한 과실(O)(판)
- 만기의 기재 없는 어음: 백지어음으로 추정(판)
-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부여의사에 대한 입증책임: 발행인이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 무효라는 점을 입증필요(O)(판)
- 백지어음 발행인: 선의·무중과실의 소지인에 대항(X)
-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된 경우: 어음행위자는 선의·무중과실의 소지인에 부당보충에 대한 항변(X)(판)
- 보충권행사(판)
 - 발행인에게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될 때까지 지급기일 후에도 행사(O)
 - 발행인에게 어음금청구소송 제기한 경우: 변론종결시 까지만 행사(O)
 - 발행인이외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: 거절증서작성기간 내에 보충권 행사(O)->상환청구(O)
 - 만기가 백지인 어음: 보충권에 대한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행사(O)
 - 인수·배서 등 어음행위 후에 백지보충: 그 어음행위는 행위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(O)
- 제권판결 받은 자: 어음외의 의사표시로 보충권행사(O)
- 보충권행사의 효력: 장래효(O)(판)

2) 발행인, 인수인, 배서인, 보증인도 가능

- **보충권 철회:** 어음회수 필요(O)
- **백지어음 양도방법**
 - **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(O):** 보충권도 이전(O)->불가분성
 - **수취인이 백지인 어음:** 인도에 의해 어음법적으로 유효한 양도(O)(판)
- **백지어음 지급제시**
 - **보충권행사 후 제시(원칙):** 효력(O),
 - **보충권행사 없이 제시(예외):** 발행지가 백지인 국내어음(판)
 - **상환청구요건:** 지급제시기간 내에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필요(O)
- **제권판결:** 가능(O)
- **이득상환청구권 행사:** 보충 후 가능(O)
- **백지어음의 선의취득·인적항변절단:** 인정(O)
- **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(판)**
 - **발행일이 백지인 수표:**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
 - **만기·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:**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
- **보충권행사 없이 어음청구권행사:** 소멸시효중단(O)(판)³⁾

제2장 배서

[문제1, 문제2]

▣ 당연한 지시증권성

-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더라도=>배서양도(O)
- 지시(배서)금지배서
 - 주체: 발행인(O)
 - 양도방법: 지명채권양도방식=>효력(O), 양도(O)
 - 양도효력: 자격수여적 효력(X)·선의취득(X)·인적항변절단(X)·담보책임(X)

▣ 배서의 요건

- **요소:** 배서인의 기명날인·서명+배서문언+피배서인의 기재
 - 은행지점장이 명판(은행지점의 주소와 명칭기재)찍고 기명생략+사인날인한 배서: 대리인의 기명날인 누락=>무효(O)(판)
- **백지식배서:** 피배서인의 기재생략(O)
- **간략식백지배서:** 배서문언+피배서인의 기재를 생략(O)
- **조건부배서:** 무익적 기재사항(O)
- **일부배서:** 무효(O)
- **환배서:** 배서인이 자기의 전자에 대하여 배서=>유효(O)
- **소지인출급배서:** 백지식배서의 효력(O)
- **말소한 배서:** 배서의 연속(X)
- **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:** 백지식 배서에 의해 어음취득(O)
- **백지식 배서로 취득한 소지인 행위**
 - 자기의 명칭·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보충(O)
 -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표시=>다시 어음배서(O)

3) 권리위에 잡자는 자 아님

- 백지보충(X)+배서(X)=>어음교부로 제3자에게 양도(O)

[문제3~문제9]

▣ 배서의 효력

● 권리이전적 효력

- 모든 권리의 이전: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권과 상환청구권(O), 보증인에 대한 권리(O)

- 인적항변의 절단: 발행인·종전의 소지인의 인적관계의 항변=>소지인의 해의(악의4)없는 경우=>대항(X)

● 담보적 효력

- 반대문구(X)=>인수·지급담보(O)

- 무담보배서(O)

- 배서금지배서(O)

- 상환청구의무(O)

● 자격수여적 효력

- 요건: 배서의 연속+권리증명=>형식적 유효(O)

■ 내용

- 권리추정력(주된 효력):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(O),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도 추정(O)

- 선의취득: 상대방의 선의+무중과실

- 지급인의 면책: 지급인의 사기+중과실=>면책(X)

▣ 선의취득 쟁점

● 양도인

- 무권리자

- 대리권 흠결 자 포함(판)

● 도품·유실물 특칙(X)

- 배서양도(O): 상속(X), 합병(X), 지명채권양도(X)

- 선의취득자: 어음소지(O), 고의·중과실(X), 독립적 경제적 이익필요(O)=> 다만 추심위임배서는 선의취득(X)

● 엄폐물법칙 적용(O)

● 배서의 연속필요(O)

- 지시금지어음(지명채권양도방법)·기한 후 배서(지명채권양도의 효력): 선의취득(X)

[문제10~문제13]

▣ 인적항변·물적항변

● 인적항변

- 원인관계의 부존재·무효·취소·해제의 항변

- 불법원인항변

- 동시이행의 항변(행사필요)

4) 중과실 포함(X)

-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항변
- 융통어음의 항변
- 어음수표행위의 의사의 흠결·의사표시의 하자(사기·강박·착오·허위표시)항변
- 부당 보충된 백지어음에 대한 항변
-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항변
- 어음수표를 도취 또는 습득하였다는 항변
- **물적항변**
- 어음수표요건 불비의 항변
- 어음수표의 만기 미도래의 항변
- 어음수표금의 일부의 지급·전액지급·상계·채무면제 등의 기재항변
- 지급제시면제의 기재항변
- 배서의 불연속의 항변·배서금지의 기재항변
-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
- 어음수표행위무능력으로 인한 무효·취소
- 무권대리의 항변(대리권의 흠결)
- 위조·변조의 항변
- 강행법규의 위반항변

[문제14]

▣추심위임배서

- **기재:** 회수·추심·대리를 위하여/대리권수여문구
- **효력:** 소지인은 모든 권리행사(O)
- **배서:** 대리를 위한 배서만 가능(O)
- **항변:** 배서인에 대항사유로서만=>소지인에 항변(O)

[문제15~문제17]

▣기한 후 배서

- **기한 후 배서의 종류:**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(O),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(O)
- **양도방식:** 어음법상 배서양도(O), 지명채권양도방식(X)->지명채권양도에 의한 통지·승낙 필요(X)
- **기한 후 배서의 효력**
- 지명채권양도의 효력(O)
- 담보적효력(X)
- 상환의무부담(X)<-이미 지급 거절된 어음이기 때문
- 선의취득(X)<-기한 후 선의취득자 보호할 필요(X)
- **만기 후의 배서:**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(O)
- **기한 후 배서 판단기준(판)**
- 실제 어음이 교부된 때
- 실제교부일이 거절증서작성 기간 후+배서일자의 기재가 만기 전인 경우:
기한후배서(O)
-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: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=>추정(O)

-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배서일이 백지인 어음의 양도: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가 경과 후에 보충권 행사(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+피배서인을 소지인)=>기한후배서(X)(판)
-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 지급거절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된 어음에 한 배서: 적법한 거절증서 작성(X)=>만기전배서와 동일효력(O)

제4장 보증

[문제1, 문제2]

▣보증의 가능

-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(O)
- 보증할 수 있는 자: 제3자(O), 어음에 기명날인·서명한 자(O)

▣보증의 방식

- 보증의 표시: 환어음 또는 보충지(O)
- 어음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·서명: 보증간주(O)
- 어음앞면에 지급인·발행인의 기명날인·서명: 보증(X)
- 누구를 위하여 표시(X):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(O)

제5장 만기

[문제1, 문제2]

▣만기의 종류

- 일람출급
- 일람 후 정기출급
-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
- 확정일출급
- 그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: 무효(O)

▣일람출급 어음의 만기

- 만기: 제시된 때(O)
- 제시: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제시(O)
- 제시기간의 단축·연장: 발행인(O)
- 제시기간의 단축: 배서인(O)
- 일정한 기일 전 제시금지문구: 발기인 기재(O)->그 때부터 제시기간 기산(O)

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

[문제1]

▣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

- 만기에 지급(X): 배서인·발행인·기타 어음채무자에 상환청구(O)
- 인수인·약속어음발행인: 상환청구의무자(X), 주채무자(O)
- 만기전 상환청구 사유
-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(O)

- 지급인의 인수여부 관계없이=>지급인파산, 지급정지, 강제집행이 주효(X)
- 인수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(O)

[문제2]

▣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

- 인수·지급의 거절의 공정증서(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): 증명필요(O)
- 인수거절증서작성시기: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(만기에 이르기까지) 내(O)
- 확정일출급·발행일자 후 정기출급·일람 후 정기출급⁵⁾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: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(O)
-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: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(발행일로부터 1년) 내 작성(O)
-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된 경우: 지급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필요(X)
- 지급인·인수제시 금지한 어음발행인의 파산선고: 파산결정서를 제시(O)
- 상환의무자의 거절증서면제(무비용상환) 작성효력
 - 상환청구통지의무(O)
 -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는 필요(O)
 -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로 추정(O)(판)
 - 발행인이 작성: 모든 어음채무자에 효력(O)⁶⁾
 - 배서인·보증인이 작성: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게만 효력(O)⁷⁾

[문제3~문제7]

▣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

- 소지인의 배서인·발행인에 대한 통지의무기간: 거절증서 작성일·무비용상환 문구의 어음제시일=>이후 4거래일 내(O)
- 배서인의 통지의무기간: 소지인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(O)
- 각 보증인에게도 통지(O)
- 무담보배서의 경우: 통지의무(O)->그 배서인의 전자에 통지(O)
- 통지방법: 제한(X), 어음반환(O)
- 통지해태: 상환청구권은 존재(O)
- 적법기간 내에 통지여부 입증: 통지의무자(O)

▣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

- 합동책임자: 발행, 인수, 배서, 보증한 자(O), 환어음의 인수인(X), 약속어음의 발행인(X)
-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=>1명·여러 명·전원에 대하여 청구(O)

제10장 변조

[문제1~문제5]

5)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.

6) 작성면제에도 불구하고 작성하면: 작성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.

7) 작성면제에도 불구하고 작성하면: 작성비용은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▣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

● 피위조자의 책임

- 원칙: 책임(X) => 물적항변사유(O)
- 예외: 표현책임(O), 사용자책임(O)
- 변조 후에 기명날인·서명한 자: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(O)
- 변조 전에 기명날인·서명한 자: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(O)
- 위조의 입증책임: 어음소지인이 진정함을 입증(O)
- 피위조의 사실: 주장자가 입증(O)
- 피위조자가 위조 알고 지급: 추인(O)
- 변조자의 기명날인·서명(X): 책임(X) -> 변조 전 배서인에 권리행사(O)
- 위조된 배서어음의 손해액: 어음금취득비용(O), 어음액면금액(X)
- 위조된 어음 할인취득 손해액: 현실적출연 할인금(O), 액면금액(X)

제10장 시효

[문제1~문제4]

- ▣ 어음의 주채무자(환어음의 인수인·약속어음의 발행인)에 대한 청구권: 만기의 날로부터 3년
- ▣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
 - 거절증서 작성된 날부터 1년간
 -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(무비용 상환문구)(O):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
- ▣ 재상환청구권: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

제8편 약속어음

[문제5~문제7]

▣ 이득상환청구권의 쟁점

- 발생요건
 -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흠결+시효로 소멸
 - 어음법상 권리구제수단(X), 민법상 구제수단(X)
- 받은 이익
 - 실질관계에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이익(O)
 - 어음권리소멸로 어음상채무 면하는 것 자체(X)
- 권리소멸: 청구의 상대방과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 소멸(O)
- 원인채무존재: 상환청구(X)
- 백지어음: 보충 후 행사 가능(O)
- 법적성질: 민법상 채권=>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양도(O)
- 이득상환청구권 양수한자: 행사(O)
- 소멸시효: 지명채권(10년)